

4. 외국인들은 러시아연방법에 의거하여 외출 시에는 여권, 비자, 거주지 등록증과 외국인 카드를 필시 지참해야 한다. 경찰관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시 상기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5. 비자 연장 시 외국인 학생들은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두 달 전에 극동연방대학교 국제부(비자와 거주등록 담당 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교육 계약서 복사본;
- ◆ 무광 컬러 반명함판 사진 1장 (3x4 크기);
- ◆ 여권, 비자, 외국인 입국카드;
- ◆ 거주지 등록증;
- ◆ 수업료 지불 영수증 복사본;
- ◆ 비자 연장비 1500 루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연장은 비자기간 만료 후 2일부터 가능하며, 단 만료 후 7일이 넘어갈 시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체류 수칙 위반이나 이민국의 필요조건에 충족 되지 않을 시, 외국인들은 45만 루블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 체류 수칙을 두 번 이상 위반할 시 해당 외국인은 본국으로 추방된다. (향후 5년간 러시아연방에 입국 불가함).

국제 관계부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
20번 건물, 651호
메일: zakrevskaya.uv@dvfu.ru
전화: 265-22-24

International Partnerships Department

Vladivostok,
Russky Island, FEFU campus,
building 20, office 651
e-mail: zakrevskaya.uv@dvfu.ru
Tel.: 265-22-24



극동연방대학교 체류 수칙
(외국인 학생을 위한 주의사항)

RULES OF RESIDENCE for foreign student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극동연방대학교 체류 수칙 (외국인 학생을 위한 주의사항)

1. 극동 연방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모든 학생은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학생들은 **매일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타당한 변명 없이 총 수업의 30%를 결석한 학생들은 극동연방 대학교에서 환불 없이 퇴학당하게 된다. 본 대학교에 재 입학할 경우에도 결석한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이는 다음 수업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 지불한 수업료는 양도 될 수 없다.
4. 시험에 낙제한 학생들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은 학생들은 극동연방 대학교에서 퇴학당 할 수 있다.
5.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블라디보스톡에 사무실 있는 러시아 보험회사와 **의료보험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 극동연방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의료보험계약서 체결에 필요한 원조를 한다.

6. 외국인 학생들은 거주등록과 비자 연장 관련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한다.
7. 외국인 학생들은 비자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에 귀국해야 한다.
8. 방학동안 고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학생들은 비자 담당 부서와 기숙사 관련 부서에 출국·귀국예정일을 명시한 신고서(письменное заявление)를 제출해야 한다.
9. 극동연방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기숙사규칙과 소방안전 규칙을 지켜야 된다.
10.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밤에 혼자 거리를 다니지 마십시오;
 - ◆ 초면인 사람을 주의 하십시오;
 - ◆ 잘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지 말고 그 사람 집에도 가지 마십시오;
 - ◆ 서류들과 귀중품을 잘 간수하십시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혹은 범죄를 목격하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극동연방대학교 국제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연방 체류 수칙 (외국인을 위한 주의사항)

1. 외국인 학생들은 아래에 명시된 다음날에 등록을 위하여 극동연방대학교 국제부(비자와 거주등록 담당 부서)에 여권, 비자, 외국인 입국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 ◆ 러시아를 처음 방문한 시;
 - ◆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로 다시 입국한 시;
 - ◆ 다른 러시아 도시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원거주 지역) 돌아온 시(매번);
 - ◆ 거주지 주소를 변경 한 시.
2. 아래의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해당 일로부터 3일 전, 극동연방 대학교 국제부(비자와 거주등록 담당 부서)에 신고서(письменное заявление)를 제출해야 한다.
 - ◆ 러시아 연방 내 다른 도시를 방문 시 (여행 기간과 목적지에서의 체류지 명시);
 - ◆ 귀국하거나 러시아로부터 출국 시(출국과 귀국일 명시);
 - ◆ 거주지 변경 시 (**거주지 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 할 것**);
3. 극동연방대학교의 기숙사에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들은 거주지 등록을 위해 거주지 관련 서류(부동산 증명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